P - 26 - 2012

인화성 액체의 혼합작업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7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O 작성자: 강 미 진
- O 개정자 : 최 이 락
- O 제·개정 경과
 - 2010년 08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 - 2012년 7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O 관련 규격 및 자료
 - Loss Prevention Data 7-36, 1989
- 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: 2012년 7월 18일

제 정 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인화성 액체의 혼합작업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페인트, 바니쉬, 락카, 프린트 잉크, 접착제 및 인화성 액체를 포함하는 물질을 제조 취급 사용할 때 사용되는 인화성 액체의 혼합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페인트, 바니쉬, 락카, 프린트잉크, 접착제 및 인화성액체를 포함하는 물질을 제조, 취급 및 사용할 때 사용되는 인화성 액체의 혼합작업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 - (가) "봉상주수 (Solid-stream)"라 함은 소화전 호스의 관창을 조작하여 물줄기가 봉모양으로 직사하도록 분무하는 형상을 말한다. 봉상주수는 목재 등 일반화재의소화에 쓰인다.
 - (나) "자기폐쇄수도꼭지(Self-closing faucet)"라 함은 주어진 유량의 한계를 벗어날 경우에는 스스로 폐쇄되는 수도꼭지를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「산업안전보건기 준에관한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위험 요인

(1) 인화성 물질과 관계되는 화재·폭발의 위험정도는 인화성 액체의 양, 그의 인화점, 취급방법 및 사용장소, 환기, 밀폐정도 그리고 인화성 액체 및 실내온도에 영향을 받는다.

- (2) 인화성 액체를 다루는 곳에는 어디서나 화재의 위험이 존재한다. 특히 실온에서 존재하는 실내 폭발위험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존재할 때 발생한다.
 - (가) 혼합작업을 실시하려는 작업실 온도보다 낮은 인화점을 가지는 액체가 누출되 거나 증기가 발생한 경우
 - (나) 실온 이상의 인화점을 가진 물질이 화학반응이나 교반에 의한 마찰로 인화점 이상으로 가열되는 경우
 - (다) 인화점(밀폐식)이 149 ℃ 이하인 물질을 끓는점에서 취급하거나 끓는점까지 가열하는 경우
 - (라) 폭발위험이 있는 설비가 실내 공간의 10% 이상 차지하는 경우
- (3) 실온보다 높은 인화점을 가지는 인화성 액체라고 하여도 이 액체의 분무 등에 의하여 미스트가 떠 있거나 실온이 낮아져서 미스트가 생길 때에는 이로 인한 화재나 폭발이 가능하다.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, 높은 인화점을 갖는 인화성 액체가 누출되어도 실내 공간에서 폭발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.

5. 안전시설 및 작업자 교육

5.1 위치 및 시공

5.1.1 일반사항

- (1) 혼합작업이 폭발위험을 가지고 있거나 저층에서 심각한 수손(Water-damage)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주건물(Main building)에 작업장을 배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.
- (2) 혼합실은 인화성 액체에 관한 일반적인 안전작업 지침 및 설비설치 기준을 따른다.

5.1.2 혼합실 위치 선정기준

(1) 실외에서 작업하는 경우 중요한 건축물로부터 최소한 22.5 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.

- (2) 액체의 부피가 5.7 m³ 이하이고 화재위험만 존재할 때에는 주건물로부터 최소 7.5 m의 공간을 유지한다.
- (3) 지하실이나 지하공간이 없는 독립된 1층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 - (가) 단지 화재위험만 존재하는 곳에는 5.1.2항의 (1)호 내지 (2)호를 준수한다.
 - (나) 만약 야적공간이 부족하여 좀 더 가까운 곳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1시간 내화성 능을 갖는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한다.
 - (다) 인화성 액체의 취급량이 5.7 ㎡ 이상인 경우는 1등급(ClassI) 노출로 하고, 5.7 ㎡ 미만인 경우는 2등급(ClassⅡ) 노출로 분류하여 각 규정에 적합한 노출벽을 설치한다. 다만, 노출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면 노출은 한 등급씩 낮춘다.
 - (라) 실내 폭발위험이 존재할 때 폭발위험에 노출되는 빌딩은 주건물에서 적어도 22.5 m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하며, 손상제한구조(Damage-limiting)를 갖추어야 한다. 이러한 구조는 압력완화벽(방출판넬)이나 가벼운 재질(Sheathing)로 된 강철 틀(Steel frame)과 같은 지붕을 포함한다. 여기서 강철틀 지붕은 강화콘크리트, 금속제소형구조물(Metal-lath-and-plaster)과 단열금속, 강화 콘크리트 블록 또는 이들의 조합과 같은 내압구조지붕을 의미한다.
 - (마) 압력완화벽 또는 지붕은 보통 0.96 kPa의 내부압력에 파괴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 압력완화지붕은 금속이나 인증된(Approved) 플라스틱으로 하여야한다. 석판(Slabs), 주입덱(Poured decks) 또는 조립지붕덮개(Built-up roof covering)가 달린 단열덕트는 환기에 실질적이지 못하다. 내압벽은 예견된 폭발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.
 - (바)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내압벽은 최소 4.8 kPa에 견딜 수 있도록 한다. 22.5 m 공간이 제공될 수 없으면 구조적 구조재(Structural member)와 바닥이 잘 접속 된 내화 및 내압구조벽 또는 노출벽을 만든다. 다층 주건물의 7.5 m 이내에 있 으면 지붕 또는 노출벽은 내화재 및 내압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.
 - (사) 압력완화벽(Pressure relieving wall)이 설치되면 부가적인 폭발방산구 (Explosion venting)는 필요 없으나, 내압구조의 건물 내에 폭발위험이 존재할 때에는 적어도 실내 용적 15 m³ 당 1 m³의 방출 면적의 방산구를 설치한다.
 - (아) 폭발방산구는 금속이나 인증된 플라스틱 판넬 또는 폭발방산 창을 이용한다.

방산구는 중요한 건물 또는 시설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. 특히 타일, 콘크리트 블록 또는 석면 또는 콘크리트 판자(Plank)와 같이 쉽게 부서지지 않는 지붕과 같은 내하중 벽(Load-bearing wall)은 피한다.

- (4) 혼합실이 주건물의 실내에 위치해야할 때에는 다음의 상황을 충족하도록 한다.
 - (가) 화재 위험만 존재하고 액체의 인화점(밀폐식)이 93 ℃ 이하일 때에는 적어도 1 시간 내화 등급을 가진 방화격벽으로 혼합실을 차단한다.
 - (나) 액체의 인화점이 93 ℃보다 높고 물 공급 설비가 적절한 곳에는 혼합작업장 주변에 4인치 경계턱 또는 격자덮개 배수도랑(Grating-covered drainage trenches)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.
 - (다) 실내 폭발위험이 존재하고 작업이 주건물 안에서 진행되면 작업실은 벽 외부에 위치하게 하고 노출되는 작업공간을 수평 및 수직으로 내화재 및 압력 구조로 차단한다.
 - ① 외벽 및 지붕은 최대 폭발 방산구를 설치한다.
 - ② 방산구는 작업실용적 7.7 ㎡ 당 1 ㎡로 하는 것이 좋다.
 - ③ 방산구는 다른 건물이나 설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.
 - (라) 작업실은 지하실이나 지하 공간이 있는 건물은 피한다. 만약 피할 수 없다면 지하공간을 메우거나 완벽한 차단 막에 의하여 격리하고, 바닥은 방수가 잘 되도록 한다.
 - ① 작업공간에 인화성 액체나 인화성 액체를 포함하는 설비 또는 파이프가 통과 하여서는 안 된다.
 - ② 지하공간에서 혼합작업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.
- (5) 혼합작업실 바닥 및 경계턱 지역은 방수구조로 하고 원활한 배수를 위해 1 m에 8 mm의 경사를 두도록 한다.
 - (가) 드레인은 최대 인화성 액체누설에 스프링클러 및 소화전 유량으로부터의 물을 더한 양을 취급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.
 - (나) 트랩(Trapped) 배수는 실외 분리 탱크 또는 적절한 처리소로 유도되어야 한다.
 - (다) 벽 배수구(Scuppers)는 그 배출이 다른 시설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상 배수를 허용해야 한다.

P - 26 - 2012

(라) 인화성 액체 배수가 설비 아래를 지나가지 않도록 설비를 배치하여야 한다.

5.2 설비 안전장치

- (1) 인화성 액체의 노출 표면을 최소로 하거나 밀폐할 수 있는 설비를 사용한다.
- (2) 모든 설비를 적절하게 설치한다.
 - (가) 화재위험만 존재하는 곳에는 내용물의 최대압력에 통상의 부식 및 마모 계수를 더하여 설계한다.
 - (나) 설비 폭발 위험이 있는 곳에는 절대운전압력의 6배로 설계하거나 방산구를 설치하며, <표 1>을 참조한다.
 - ① 방산구를 설치할 때는 방습 덮개 및 옥외로 향한 개별 방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.
 - ② 방산라인에는 역화방지기를 부착한다.
 - ③ 증기공간은 불활성화가 바람직하므로, 설비는 서비스가 종료될 때와 서비스 시설로 재 저장될 때 폭발범위 형성을 피하기 위하여 불활성가스로 퍼지하여 야 한다.
 - ④ 콘테이너 길이는 그 폭의 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.

<표 1> 내부절대압력과 최소 방산면적의 비

최대 절대운전압력에 대한 설비의 최대 강도의 90%에서 내부절대압력의 비	최소 방산(vent) 비(ratio)	
	[m²/m³]	[ft²/ft³]
6	None	None
5	1 / 120	1 / 400
4	1 / 60	1 / 200
3	1 / 30	1 / 100
2	1 / 15	1 / 5
$1\frac{1}{2}$	1 / 7.5	1 / 25
1	1 / 3	1 / 10

(다) 위에서 권장한 설비의 폭발 방산 비에 따라 방산구가 설치되지 않을 때에는 설

비 안에 불활성 분위기를 제공 및 유지하도록 불활성 가스를 지속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. 만약 불활성 분위기가 유지될 수 없다면 운전자에게 고도의 훈련을 실시하고 가능한 폭발 방호시스템을 설치한다.

- (3) 강화콘크리트 또는 방호된 강철 지주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. 주 설비에 노출된 강 철 지주는 자동 물분무설비나 스프링클러에 의하여 방호되고 실내 폭발 위험이 없 을 때에만 수용할 수 있다.
- (4) 익류(Overflow) 배수관을 설치한다. 다만, 스프링클러 및 소화전 유량을 막을 수 있는 방습덮개가 설치되어 있고, 탱크를 충전할 때 익류를 방지할 수 있는 탱크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. 소형 이동식 혼합 탱크에 익류설비가 필요하다면 물을 배출하고 인화성 액체를 가둘 자기 저장 드레인이 설치되어야 한다.
- (5) 가열을 할 때에는 스팀, 온수, 유기열매체, 또는 나염을 제외한 다른 수단을 사용한다.
 - (가) 작업자가 설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속 온도기록 장치를 설치하되, 가능한 한 자동조절 가열 장치를 설치한다. 다만, 고온에서는 차단 할 수 있도록한다.
 - (나) 배관이나 가열 코일의 온도는 인화성 액체의 발화온도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한다.
- (6) 인화성 액체의 펌핑 및 배관 시스템은 관련 작업 실무지침을 따라야 한다. 물질 이 송시스템은 혼합 작업 시 요구사항과 부합한 최소 입출압력을 유지하도록 설계한다.
- (7) 저장과 혼합을 분리하여 혼합지역 안의 인화성 액체의 저장양은 한 근무조가 사용 할 최소량으로 한다.
- (8) 드럼에서 인화성 액체를 다른 설비로 이송(Dispensing)할 때에는 드럼펌프나 자기 폐쇄수도꼭지(Self-closing Faucet)를 사용한다. 다만, 인화점이 43 ℃ 미만인 액체의 경우에는 안전마개(Bung)를 사용한다.
- (9) 계량 탱크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되 인화성 액체의 펌핑 및 배관 시스템에 대한 실무 규정에 따른다.
- (10)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감시창을 설치한다.

P - 26 - 2012

5.3 환기

- (1) 인화점이 43 ℃ 이하이거나 혹은 149 ℃ 미만인 인화성 액체를 인화점 이상으로 가열하는 경우 바닥 면적 1 ㎡에 대해 분당 0.3 ㎡의 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연속 기계적 환기장치를 설치한다.
 - (가) 공기 순환의 우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정된 적절한 공기 주입구를 벽 외부에 설치한다. 만약 다른 공장 지역에서 공기를 채취할 필요가 있다면 벽이나 구획 벽의 주입구 개방 지점에 자동폐쇄 화재셔터 또는 댐퍼를 설치한다.
 - ① 환기를 위한 실내 공기의 흡입은 장치의 기저 및 피트 가까이에서 실시한다.
 - ② 배기 팬은 작업설비에 공급할 전력과 연동한다.
 - (나) 저인화점 물질이나 가열된 액체를 공기 중으로 방출하는 배기가스 환기장치는 장치로부터 0.6 m 이내에서 배기가스의 농도가 폭발하한의 25%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화성 증기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.
- (2) 자연환기는 43 ℃ 보다 높은 인화점을 가지는 비 가열액체나 149 ℃ 보다 높은 인화점을 가지는 가열된 액체의 경우에 허용된다. 이때 환기장치는 바닥 면적 500 m²(ft²)당 1 m²(ft²)의 입구면적의 환기장치를 설치한다.
- (3) 독성이 있는 용제의 환기장치는 위에서 권장한 것 이상의 환기율을 요구한다.

5.4 발화원

- (1) 인화성 액체의 혼합작업을 실시하는 지역에서 열적, 기계적인 발화원을 제거한다.
- (2) 위험지역의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로 한다.
- (3) 43 ℃ 미만의 인화점을 가지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설비는 전기 접속 및 접지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(4) 전기 용접 및 용단 작업을 제어하기 위한 작업허가 제도를 실시한다.
 - (가) 용단 및 용접을 실시하는 동안 혼합지역 내의 혼합장치를 이동한다.
 - (나) 가능하다면 기계적 절단 방법을 이용하고, 이렇게 할 수 없을 때에는 설비 안의 모든 물질을 배출시키고(Drain) 스팀 청정(Steam clean)을 실시하고, 모든 배관 을 비우고 환기를 실시한다.

- (다)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지 이중으로 확인한다.
- (라) 10.5 m 이내의 모든 가연물은 없애거나 불연재로 충분히 덮고 화재감시인을 배치한다.
- (5) 가열을 실시할 때에는 발화원이 될 수 없는 스팀이나 다른 열매체와 같은 실내 가열시스템을 이용한다.
 - (가) 가열장치가 혼합 지역의 외부에 위치하고 공기의 재순환이 없다면 직화식 가스-공기 히터의 사용도 수용할 수 있다.
 - (나) 스팀 또는 온수의 온도는 발화온도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한다.
 - (다) 43℃ 이하의 인화점을 가지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의 가열장치는 바닥 위 1.2 m 위치에 설치한다.
 - (라) 방폭 전기라디에이터나 승인된 촉매히터를 사용할 수 있다.

5.5 방호 장치

- (1) 다음과 같은 상황에는 적절한 스프링클러 등 방호장치를 설치한다.
 - (가) 93 ℃ 이하의 인화점을 가지는 액체가 있는 상급위험용도(Extra- hazard occupancy)
 - (나) 93 ℃보다 높은 인화점을 가지는 보통위험용도
- (2) 실내 폭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스프링클러 배관, 밸브, 관부속품에 대한 방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한다.
- (3) 대량의 물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고가 물질의 혼합작업 또는 플랜트 생산에 아주 중요한 물질의 혼합작업에는 자동 이산화탄소 및 화학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한 다.
 - (가) 탱크가 완전히 개방되어있는 경우에는 고정소방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한다.
- (4) 소화기 및 스프레이와 봉상주수(Solid-stream) 노즐이 달린 호스를 제공한다.
- (5) 혼합실을 점검할 순찰자를 배치하여, 일과 후 첫 순찰 시에는 설비가 정지되고 인화성 액체흐름을 제어하는 밸브가 닫혀져 있는지를 확인한다.

P - 26 - 2012

5.6 유지관리 및 근로자 훈련

- (1) 작업자에게 설비의 안전 운전에 관한 훈련을 실시한다.
- (2) 작업자 및 소방원에게 위험물의 누출, 화재 또는 폭발 시 준수해야 할 적절한 비상절차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며, 공공소방서와 연계한 연합소방훈련 계획을 수립한다.
- (3) 설비가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설계된 예방정비 프로그램을 수립한다.
- (4) 고도의 정리정돈기준을 수립한다.
 - (가) 누출물은 신속히 씻어낸다.
 - (나) 폐기물을 담아놓는 덮개가 있는 금속제 용기를 준비하고 폐기물은 최소한 매일 제거한다.
- (5) 복도는 소방을 위한 인력과 장비의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개방되어 있도록 한다.
- (6) 이황화탄소나 저 발화온도액체가 존재할 때에는 방폭공구를 사용한다.